

제 81

1980.12.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 중 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해

- 제 1470호 :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 1471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
스료징수조례 폐지조례 3
제 1472호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설치조례 폐지조례 4
제 1473호 : 서울특별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로징수조례증
개정조례 4

◎ 훈령

- 제 538호 :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 5

◎ 고 시

- 제 40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설시계획인가고시 15
제 401호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16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02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7
제 7 호 (종로구고시) : 종로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8
제 92 호 (용산구고시) : 용산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8
제 1 호 (성북구고시) : 성북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9
제 22 호 (구로구고시) : 구로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9
제 382 호 (영등포구고시) : 영등포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20
제 57 호 (강동구고시) : 강동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20

◎ 공 고

제 364 호 : 전기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	21
------------------------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 12. 4.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70 호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에 제 6호 및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전립 용자금 상환 원리금 수입

7. 준공미집 기준건축률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제 7조 중 제 6호를 제 8호로 하고 제 6호 및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전립 용자금

7. 준공미집 기준건축률 실의위원회 운영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고한다.

1980. 1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간 ⑤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71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355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1-4 제812호 시

보 1980.12.4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설치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간 ①

◎ 서울특별시조례제 1472 호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6호 서울특별시교원연수원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수수료 징수조례증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간 ②

◎ 서울특별시조례제 1473 호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

수수료 징수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 선발수수료 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구 분	징 수 한 도 액	비 고
사립국민학교	500 원	
유 치 원	500 "	

부 칙 (8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80.12.4.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38 호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매점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 매점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 매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운영자금) ① 매점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자금은 공무원연금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차입금은 무이자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 기준에 의거 상환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 4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내무국장이되고 상임위원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부 주무과장 및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매점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매점 운영의 수익을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매점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매점 운영에 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경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경기회의는 연 2회(예산, 결산)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보 1980.12.4.

③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실의한 사항은 시장의 재결로 효력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운영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매점운영책임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감사) ①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감사로 지정할 수 있고 감사는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감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3장 조 직

제9조(조직) ①매점업무의 집행은 운영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매점 운영 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행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매점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리한다.

③상임위원은 운영위원장의 보좌하며, 운영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장 을 대리한다.

④매점운영 책임자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매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별도의 종업원을 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부록 및 보수

제11조(일과시간) ①매점 종사자의 영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활용 원칙으로 한다.

②매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일부 종사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피복지급) ①운영위원장은 매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종사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여 활용시킬 수 있다.

<p>② 제복을 지급받은 종사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p> <p>제 14 조 (수당지급) ① 매점 종사자 중 정상적인 영업외에 2시간이 상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기준표에 따른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 15 조 (영업실적수당) ① 영업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종사자에게 영업 실적 수단을 지급한다.</p> <p>② 영업실적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시기는 전반기 (1 - 6월) 및 후반기 (7 - 12월)의 영업실적에 따라 7월과 익년도 1월로 한다.</p> <p>③ 영업실적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액은 영업실적,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예산회계</p> <p>제 16 조 (회계원칙) ① 매점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매점의 재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p> <p>③ 매점의 회계연도는 서울시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p> <p>④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p>	<p>생한 달을 기준으로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p> <p>제 17 조 (회계판제 직원의 임명)</p> <p>① 운영위원장은 회계판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인 임직원중에서 출납명령관 및 출납원과 동분임 회계직을 임명하여 회계판제업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p> <p>② 출납명령관 및 출납원의 사무처리 규칙은 운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회계판제직원은 자신의 충임을 설명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예산서의 작성) ①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한다.</p> <p>② 예산서는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③ 예산서에는 회계연도 중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입과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p> <p>제 19 조 (예산의 설립) 매점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재결로 확정한다.</p> <p>제 20 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서 계상할 수 있다.</p>
---	---

<p>②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장이 관리한다. ③ 매점운영 책임자는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1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위원회장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의거 예산을 배정한다.</p> <p>제 22조 (예산의 전용) 운영위원회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항 및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p> <p>제 23조 (초과수입에 의한 지출) 소요의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p> <p>제 24조 (거래의 처리)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및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한다. 2.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체전표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전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정증정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4. 전표에 기재된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여, 분개정리후 오류가 발견되었을시에는 반드시 	<p>정정전표를 작성하여 정정하여야 한다.</p> <p>② 회계판계장표의 서식과 규격은 운영위원회장이 정한다.</p> <p>제 25조 (재정과목) 회계처리의 계정과목은 별표2와 같다.</p> <p>제 26조 (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p> <p>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하여 다만, 분개장은 전표 및 일제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칼을 하고 보조부는 카드로 대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계정원장은 과목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당해 과목에 일제표에서 금액을 전기하고 매월 말 대차누계를 기재한 후 잔액을 가입하여 마감한다. 다만, 현금계정은 일제표의 일금합계액을 총계정원장의 차별에 출금 합계액을 대변에 각각 전기한다. 2. 보조부는 당해 계정 거래일체의 명세를 분류 기입하고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 말 총계정원장을 당해계정과 대조 확인한다. <p>제 27조 (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	---

제 28 조 (일계표) 일계표는 매일 일과 종료시를 기준으로 당일분의 사례전표를 집계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 일계표의 계정과목은 별표 2에 의한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일계표에는 대체 및 현금출납에 관한 난을 설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일계표에는 전일 현금잔액을 대변에 기록하고 금일의 현금잔액을 차변에 기입하여 대차를 일치시킨다.

제 29 조 (증빙서)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대금 지불서 : 짐수보고서, 청구서, 영수증
 2. 인건비, 여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생할 수 있다. 나만, 영수증은 수취인 별도 받아야 한다.
 3. 출장여비 지불서 : 여비 지불 계산서
 4. 기타 지불서 : 청구서, 영수증
- ②판공비, 소액운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30 조 (증빙서 작성의 생략) 오기 경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아 단순히 계산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이 기재된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1 조 (금전의 보관) ①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사급운영상 필요한 금액을 소액현금으로 별도 보관시킬 수 있다.

제 32 조 (금전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에 의하여 수취인 별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건비, 여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생할 수 있다. 나만, 영수증은 수취인 별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지출원인 행위 결의서의 작성) ①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 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비용예산 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지출원인 행위 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인건비, 여비, 계세공과금, 판공비
2. 정례적인 확정경비

21-10 제812호 시

보 1980.12. 4

3. 법령규정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4.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5. 장기 계수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6. 10만원 미만의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제34조(계약의 방법) 운영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예에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5조(수의 계약의 범위) 운영 위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2. 예정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를 하게 하는 경우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농업협동

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정부 출연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5. 당해 물품의 제조자가 단일인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7.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수요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만한 시간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수의 계약시 예정가격작성의 생략) 제35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수의 계약시 계약작성의 생략) ①제35조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등 계약서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한다.

<p>제 38 조 (장기 계속 계약) ① 판매를 주체으로 하는 재료 또는 상품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 7 장 영업 및 물품관리 제 42 조 (이용대상의 제한) ① 매점의 이용대상은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영업의 종류에 따라 외래방문객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 전항의 계약은 단가 또는 금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량 또는 기간만 계약할 수 있다.</p>	<p>제 43 조 (물품의 종류) ① 매점의 물품은 별표 4의 분류기준에 따라 집기 소모품 재료 및 상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집기는 품목별로 소정의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제 4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모 정리한다.</p>
<p>제 39 조 (계약보증금의 면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상품은 소정의 판매품 원장 카드에 금액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판매보고에 따라 정리한다.</p>
<p>제 6 장 결산 제 40 조 (결산의 종류) 결산은 분기별 가결산과 연말 결산으로 구분 한다.</p>	<p>제 44 조 (물품관리) ① 매점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임직원 중에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영관과 동분임직을 임명할 수 있다.</p>
<p>제 41 조 (결산 지침) 매점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운영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영관의 사무처리 규칙은 운영위원회 별도로 정한다.</p>
<p>1. 손익계산서 2. 대차내조표 (별표 3 참조) 3. 합계잔액사진표 4. 미정 내역표 5. 예산집행실적보고서</p>	<p>제 45 조 (재물조사 및 재고조사) 상품 및 집기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21-12 제 822 호 시

보 1980. 12. 4

제 46 조 (부속품의 처리) ① 재물조사 또는 재고조사의 결과 부속품이 발견된 때에는 판매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표리자로서의 주의를 대단히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망실 처리할 수 있다.

② 손실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 조 (불용품의 처리) ① 매점 점기 등 폐품 또는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청리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또는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처리한다.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처리하여 청리할 수 있다.

② 번질 또는 계절적 영향이나 소비자의 기호 변동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이 정하는 가격에 따라 원가의 하루 판매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48 조 (불량품의 처리) 매점에서 판매한 품목이 불량품인 경우에 그 하자와 책임이 매입자에게 있지 않을 때에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0.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간의 및 휴일 영업수당
가. 지급기준액

직급별	시간의 영업수당(시간당)	휴일영업수당(일당)
3. 을	1,200 원	2,500 원
4. 급 갑	1,000 "	2,400 "
4. 급 을	1,000 "	2,400 "
고용원, 잡급	1,000 "	2,400 "

나. 계산방법

- 1) 공무원의 시간의 영업수당은 정규의 근무시간을 2시간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2) 종업원의 시간의 영업수당은 통상적인 영업으로 파의 근무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특별조사, 재고조사, 특별영업, 기타 통상영업외의 자유로 2시간 이상 파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1일 3시간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휴일 영업수당은 공휴일에 4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일당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제 정 파 목

1. 비용부록

장	판	항	목
매점	1. 매점비용	1. 상품비 2. 인건비 3. 관리비	1. 상품매입비 1. 매점급여 2. 매점 영업실적 수당 3. 매점 기타수당 4. 매점 금량비 5. 매점 후생비 1. 수수료, 수선비 2. 소모품비 3. 퍼복비 4. 감모 손질비 5. 사무비 6. 대손상자비 7. 잡비 8. 가전제품 취급수수료 9. 보상비 10. 기관운영 관공비 11. 특별 관공비 12. 여비 13. 수도 광열비 14. 개판비 상작

2. 수입부문

장	판	항	목
1. 직영현금 매점	1. 직영현금 매점	1. 판매수입 2. 기타수입	1. 상품 판매수입 1. 상품매입 예누리 2. 이자수입 3. 잡수입

21-14 제 802 호

시

1980.12.4

<별표 3>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항	세 항	목
1. 자 산	1. 유동자산	1. 현금 2. 당좌예금 3. 예금계좌 4. 개시예금 5. 가입금 6. 미수수입 7. 익상매출 8. 재고 9. 소재 10. 소재보유 11. 사무장 12. 저축장 13. 이월상금 14. 선금 15. 예치보증금
	2. 고정자산	1. 설비 2. 집기 3. 전화기 4. 차입보증금
	3. 이권자산	1. 개판비
2. 부채	1. 유동부채	1. 외상매입금 2. 선수금 3. 예수금 4. 세수보증금 5. 미지급금 6. 가수금 7. 미지급금 8. 선수금액
	2. 고정부채	1. 차입금
3. 자본	1. 자본금 2. 이익잉여금	1. 자본금 1. 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별표 4>

물 품 분 류 기 준

구 분	분 류 기 준
집 기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1회 사용으로 재 사용이 불가능 또는 사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지 않도록 내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되는 물품 중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소 모 품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단음 차호에 해당하는 물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가치가 소멸되는 물품 2. 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물품 3. 유리, 플라스틱, 도자기, 질그릇, 섬유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품으로서 짜손되기 쉬운 물품 4. 내용기간이 1년 이상 되더라도 단가는 일만원미만의 소액이고 관리상 유실우려가 많은 품목 (예: 수저, 칠그릇등) 5.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 생산하거나 시설 보수공사등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등) 6. 기타 제 1호내지 제 5호와 유사하는 성격의 물품
상 품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는 상태로 직접 판매하는 물품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시 고시 제 311 호 (80.8.30)로 지정고시된 판내 손병희 선생묘소 입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 관제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미치하 토지인 건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0.12.4

서 울 특 별 시 장

21-16 제 812 호 시

보 1980.12.4

가. 사업시행자 : 도봉구 우이동 158 번지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년월일 1) 차수예정일 : 80. 11 (인가일로부터)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명칭 : 손병희선생 묘소앞 도로 포장공사	2) 준공예정일 : 80. 12
다. 사업의 규모 : B=6m, L=80m	바. 소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도봉구청장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소성명	비고
우이동	153번지	임	480㎡	천도교, 유지재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1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건설부 공고 제 82호(72.11.6)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허가된 천호토
지구획정리 지구내 토지중 시장부지
로 결정된 471구획(채비지)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호(79. 12. 10.)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차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천호토
지구획정리지구 471구획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 사업 (시장)
명칭 : 동서울 종합물산 상가
(소매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질동
 산 39-55
 성명 : 동서울 종합물산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임의철
라. 사업의 규모
 지적 : 1,000 평
 건축면적 : 3,753.05 ㎡
 (지하 975.3 ㎡, 1층 1호동
 1,129.875 ㎡, 2호동 518 ㎡
 2층 1,129.875 ㎡)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차수년월일 : 1981. 3. 1
 준공예정일 : 1981. 7. 15

제812호 시

보 1980.12.4 21-17

부: 사용할 토지명세

소 재 지	지 적	소유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471구획	1,000 평	서울강동구길동산 39-55 동서울종합물산(주) 대표 임의철

사. 위치 및 계획형면도: 별첨 (도면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0 호 (80. 8.1)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79.12.10) 호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파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5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연장	가 점	중 점	비고
기정 변경	소로	1	244	천호동 185 번지	천호동 121 번지길동 (중 1-84 호)	노선연장
	"	"	250	"		
기정 변경	"	"	156	" 178 번지	천호동 121 번지 중로 1-84 호	"
	"	"	174	"		
기정 변경	"	3	62	" 153 번지	천호동 153 번지 중로 1-84 호	"
	"	"	76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41-18 제 812 호 시

보 1980.12.4

◎ 종로구청 고시 제 7 호

종로구 광고물 계획 정비 지구 지정 고시

-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 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 계획 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계획 정비에 확정될 때까지 신규 개설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 판례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자 공함한다.

1980.12.1

종로구청장

○ 계획 정비 지구

구간	연장	비고
세종로 202 번지에서 신문로 1 가 58 번지까지 이르는 도로 양변	500 미터	

◎ 용산구청 고시 제 92 호

용산구 광고물 계획 정비 지구 지정 고시

-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 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 계획 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확정될 때까지 신규 개설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판례도서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자 공함한다.

1980.12.1

용산구청장 이원종

○ 계획 정비 지구

구간	연장	비고
제 3 한강교 북단 ~ 단국대학교 입구 (한남동 31 번지에서 469 번지에 이르는 도로 양변)	700 m	도면 참조

제 812 호 시

보 1980.12.4 21-19

◎ 성북구청 고시 제 1 호

성북구 광고물계획 정비지구 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제시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0.12.3

성북구청장 정영섭

○ 계획정비지구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난제로	우측 : 삼선 4 가 349 ~ 삼선 5 가 342 좌측 : 삼선 4 가 346 ~ 삼선 5 가 291	천도 500m	돈암교 R ~ 경동교 교입구

◎ 구로구청 고시 제 22 호

구로구 광고물계획 정비지구 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제시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3.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 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0.11.29

구로구청장

○ 계획정비지구

구간	연장	비고
독산동 143-1 호) 부터 " 953-7 호	750 미터	도로 좌우 전면 건물부분.
" 159-22, 23, 24, 25 호까지 이르는 도로 양변		

21-20 제 012 호 시

보 1980.12.4

◎영등포구청 고시 제 382 호

영등포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한다.

2.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신규개시 및 변경행위를 할수 없다.

3.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0.11.30

영등포구청장

○ 계획정비지구

구간	연장	비고
여의도 지역	7,000 미터	도로좌우전면부분

도안별첨생략

◎강동구청 고시 제 57 호

강동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정비 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한다.

2.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

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신규개시 및 변경행위를 할수 없다.

3.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0.12.4

강동구청장

※ 계획정비지구

구간	연장	비고
상동구성내동 318 번지에서 성내동 '64 번지까지 이르는 도로 양면	850 미터	도로좌우전면전용부분

제 812 호

시

보 1980. 12. 4 21-21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64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 12. .

서울특별시 공

다 응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구분	허가번호	취소사유
한국로라전기	김 낭기	서대문미근동23-2	전열기구류	1-7-30	전기용품안전관
			전동력용· 기제기구류	1-8-27	리법제 7조 1 항 위반